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4673 거절결정(특)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광옥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6. 27. 2021원29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접이식 문 연결구조

2)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2020. 11. 20./ 제10-2020-0157135호

3) 청구범위(원고의 2021. 6. 4.자 보정 반영)

【청구항 1】이웃한 제1 및 제2 문짝(20,30)의 서로 마주보는 측단 모서리면(21,31) 사이에서 각각의 상기 측단 모서리면(21,31)에 상대 회전 가능하게 접촉되어, 상기 문짝 (20,30)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틀체(3); 상기 접속틀체(3) 상단에 제1 및 제2 연동기어(6, 7)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R)을 형성하도록 상기 접속틀체(3)의 내부 공간(S)에 삽 입되고, 상기 접속틀체(3)의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제1 및 제2 체결공(27,28)이 서로 이 격져서 형성되는 보스블럭(5); 상기 보스블럭(5) 위에서 상호 맞물림된 상태로 회전 가 능하게 장착되는 제1 및 제2 연동기어(6,7); 및 상기 제1, 제2 연동기어(6,7) 위에 각각 의 자유단부가 일체로 결합되고, 상기 측단 모서리면(21.31)과 인접한 상기 문짝(20.30) 의 상하단 모서리(22,32)의 말단 부분에 각각의 고정단부가 일체로 결합되어, 상기 제1 문짝(20)은 상기 제1 연동기어(6)와. 상기 제2 문짝(30)은 상기 제2 연동기어(7)와 각각 동기 회전하도록 연결하는 제1 및 제2 고정판(8,9);을 포함하고, 상기 보스블럭(5)은 그 위쪽에 장착되는 상기 제1 및 제2 연동기어(6,7)가 접속틀체(3)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 록 하는 깊이를 남기도록 내부 공간(S)에 삽입되어, 상기 고정판(8.9)에 의해 상방이 마 감 처리되고, 상기 보스블럭(5) 위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는 제1 및 제2 연동기어(6.7) 는 상기 접속틀체(3)의 외부로 돌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 고

정판(8.9)과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문 연결구조.

4) 발명의 주요 내용

키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 본 발명은 접이식 문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접을 수 있게 연결된 문짝과 문짝으로 이루어진 접이식 문에 있어서, 접이식 문의 개폐 상태와 무관하게 상시로 접이식 문의 문짝과 문짝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접이식 문 연결구조에 관한 것이다.

[0004] 그런데, 위와 같은 종래의 폴딩도어(101)는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연결힌지(107)가 문짝틀(111)의 측단 모서리면에 부착되므로, 문짝(105)을 접었을 때는 문짝(105) 사이에 큰 틈새가 발생하지 않으나, 문짝(105)을 펼쳤을 때는 연결힌지(107)의 두께로 인해 문짝(105)들 사이에 큰 틈새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0005] 반대로,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결힌지(107)가 문짝틀(111) 외곽의 테두리면에 부착되는 경우, 문짝(105)을 펼쳤을 때는 문짝(105) 들 사이에 틈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문짝(105)을 조금만 접어도 문짝(105) 들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0006] 더욱이, 두 경우 모두 도어(101)의 전면 또는 후면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힌지 (107)가 폴딩도어(101) 전체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도 있었다.

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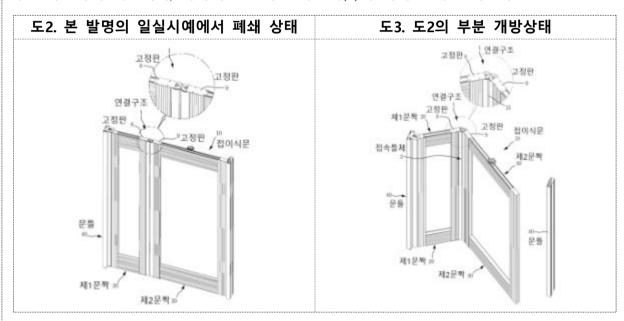
[0008]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접이식 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접이식 문의 개폐 상태와 무관하게 문짝과 문짝 사이에 발생하는 틈새를 상시로메워 마감하여 접이식 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접속틀체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이 문짝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접이식 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한편, 접속틀체(3)는 위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제1 문짝(20)과 제2 문짝(30)을 절첩 가능하게 매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보스블럭(5)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 도 4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및 제2 미끄럼 지지면(11,12)을 잇는 경계 부분에 한 쌍의 압박홈(13)이 형성된다. 이 압박홈(13)은 도 5에 도시된 것처럼, 제1 및 제2

미끄럼 지지면(11,12)을 연결하도록 연속적으로 형성되는데, 내부 공간(S)에 삽입된 보스블 럭(5)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를 갖도록 내측으로 오목하게 함입되며, 접속틀체(3)에 대한 제1 및 제2 문짝(20,30)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폭을 갖는다. 따라서 접속틀체(3)는 전체적으로 보아 8자와 유사한 외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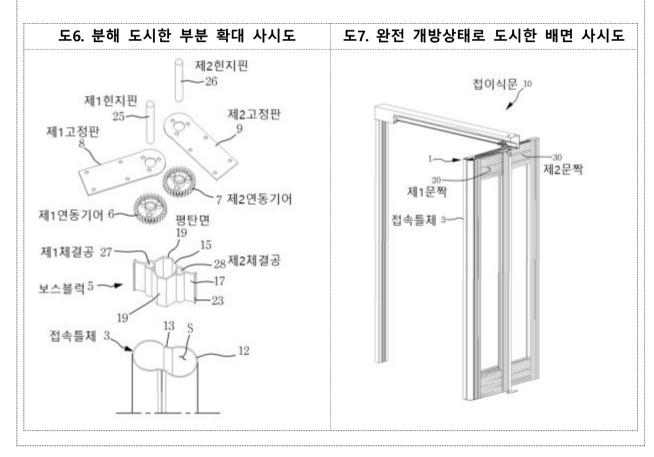
[0026] 본 발명의 접이식 문 연결구조(1)가 적용된 접이식 문(10)은 폐쇄상태에서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문틀(40) 내에서 제1 및 제2 문짝(20,30)이 일자로 곧게 펴져 출입구를 막는다. 이때, 연결구조(1)도 도 2에 상세 도시된 것처럼, 제1 및 제2 문짝(20,30)을 따라 일자로 나란하게 배열되며, 따라서 당연히 접속틀체(3)에 의해 틈새를 메운다.



[0027]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제2 문짝(30)을 밀거나 당기게 되면, 접이식 문(10)은 예컨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쪽 또는 바깥쪽 어느 한 쪽으로 회동하여 출입구를 개방하기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도 7에 도시된 것처럼 완전히 접히면서 접이식 문(10)을 개방한다. 이때, 연결구조(1)도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의 등변과 같이 절곡되었다가 도 7과 같이 완전히 접히는데, 이는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제2 문짝(30)의 회동으로 인해 제2 연동기어(7)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이에 따라 제1 연동기어(6)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제1연동기어(6)의 회전에 연동하여 제1 문짝(20)이 반시계방향으로 회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접속틀체(3)는 제1 및 제2 문짝(20,30)들이 회동하는 동안 항상 도 8

에 도시된 것처럼, 문틀(40)과 나란한 배치를 유지하므로, 제1 및 제2 문짝(20,30) 사이의 틈새를 안정적으로 메우면서 문(10)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한다.

[0028] 반대로, 도 7의 문(10) 개방 상태에서 사용자가 제2 문짝(30)을 밀어 펼치게 되면, 문(10)은 도 3의 상태를 거쳐 도 2의 상태로 폐쇄되는데, 이때 제2 문짝(30)은 제2 연동기어(7)와 함께 반시계방향으로 회동하면서 제2 연동기어(7)에 의해 제1 연동기어(6)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제1 연동기어(6)는 제1문짝(20)과 함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제1 문짝(20)을 펼침으로써 문(10)을 폐쇄한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2012. 7. 25. 발행된 일본특허공보 특허 제4986717호에 게재된 '힌지 유닛'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 기술분야 및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01] 본 발명은 2장의 패널체를 요동 가능하게 연결하기 위한 힌지 유닛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0002] 일반적으로, 복수의 패널체에 의해 개구부를 개폐하도록 한 개폐 장치 중에는, 인접하는 패널체의 패널 측단부끼리의 상하 단부를, 1쌍의 기어를 사용하여 구성한 연결 부재(힌지 유닛)에 의해 요동 가능하게 연결하고, 패널면끼리가 대향하여 패널체가 접힌 상태가되는 접기 자세와, 패널 측단면끼리가 대향하여 신전(伸展)된 상태가 되는 신전 자세로 요동 자세 변동함으로써, 개구부를 개폐하도록 한 소위 접이식 도어 장치가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패널체가 접기 자세에서 신전 자세로 자세 변동하는 과정에서는, 인접하는 패널체의 측단면끼리의 사이가 점차 근접 대향하도록 작동하고, 여기에 손가락 등이 낄 우려가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0003] 이 대책으로서, 인접하는 패널 측단면끼리의 사이에, T자형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바리케이드가 패널 측단면 사이를 막음으로써 손가락 낌을 방지하도록 구성한 것이 제창되어 있다(특허문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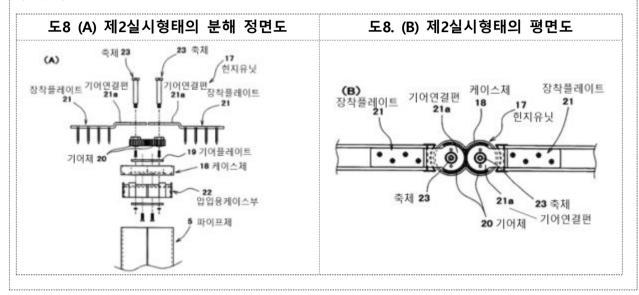
[0004] 그러나, 상기 특허문헌 1의 것에서는, 바리케이드를 패널체 연결부의 모든 위치에 형성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바리케이드는 패널체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립되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 수가 많은 접이식 도어 장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품 개수가 많아져 설치 작업이 번잡하고, 작업 시간이 길어져,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형태로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도 8에 나타내는 제2 실시형태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제2 실시형태의 파이프체(5)는 제1 실시형태와 동일한 것이 이용되고 있으며, 힌지 유닛(17)은 파이프체(5)와 동일한 외형상을 한 바닥이 있는 통상의 케이스체(18)에, 기어 플레이트(19)와 1쌍의 기어체(20)를 수용하고, 이들 기어체(20)에 장착 플레이트(21)의 기어 연결편(21a)을 적층한 상태로 하고, 또한, 상기 케이스체(18)의 하방에, 파이프체(5)의 상하 단부에 압입 가능한 형상으로 형성된 압입용 케이스부(22)를 적층하고, 이들 케이스체(18), 기어 플레이트(19), 기어체(20), 장착 플레이트(21), 압입용 케이스부(22)를, 1쌍의 축체(23)에 의해 일체화함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힌지 유닛(17)은 1쌍의

기어체(20)의 맞물림에 기초하는 회전에 의해, 선단부(21b)에 주·부패널체가 연결되는 장착 플레이트(21)가 요동하도록 구성되는데, 이것에서는 압입용 케이스부(22)를 파이프체(5)에 압입함으로써 파이프체(5)에 지지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압입용 케이스부(22)의 파이프체(5)로의 압입 자세를 조정함으로써, 장착 플레이트(21)의 요동 지지부(축체(23))를 조정할수 있다.



2) 선행발명 2(을 제3호증)

선행발명 2는 2010. 2. 10. 발행된 일본 특허공보 특허 제4412677호에 게재된 '회전접이창'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해당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6.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13. 해당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앞서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 11. 17. 특허심판원에 해당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원2922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27.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 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보스블럭은 접속틀체 상단에 제1, 2 연동기어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R)을 형성하도록 접속틀체의 내부 공간에 삽입되고, 제1, 2 연동기어는 해당 수납공간에 수납되어 접속틀체의 외부로 돌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1, 2 고정판과 결합되는데, 선행발명 1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다.
-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1, 2 연동기어를 고정하는 구조가 단순한 반면, 선행발명 1은 기어체를 고정하는 부품이 많아 구조가 복잡하고 조립이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출원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작용효과가 다르다.

나, 이 사건 출위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출원발명	선행발명 1
1	이웃한 제1 및 제2 문짝(20,30)의 서로 마	○ [도 7, 8] 주·부패널체(3,4)의 모서리 사
	주보는 측단 모서리면(21,31) 사이에서 각	이에 배치되어 주·부패널체(3,4)가 상대 회
	각의 상기 측단 모서리면(21,31)에 상대	전하도록 연결하는 파이프체(5)
	회전 가능하게 접촉되어, 상기 문짝(20,30)	○ [0020] 힌지 유닛(17)은 1쌍의 기어체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틀체(3) ;	(20)의 맞물림에 기초하는 회전에 의해, 선
		단부(21b)에 주·부패널체가 연결되는 장착
		플레이트(21)가 요동하도록 구성
2-1	상기 접속틀체(3) 상단에 제1 및 제2 연동	○ [도 8] 압입용 케이스부(22) 가 파이프체
	기어(6,7)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R)을	의 내부 공간에 압입
	형성하도록 상기 접속틀체(3)의 내부 공간	○ [0020] 케이스체(18), 기어 플레이트(19),
	(S)에 삽입되고, 상기 접속틀체(3)의 축방	기어체(20), 장착 플레이트(21), 압입용 케
	향으로 연장되어 제1 및 제2 체결공	이스부(22)를, 1쌍의 축체(23)에 의해 일체
	(27,28)이 서로 이격져서 형성되는 보스블	화함으로써 구성
	럭(5);	
2-2	 상기 보스블럭(5) 은 그 위쪽에 장착되는 	
	상기 제1 및 제2 연동기어(6,7)가 접속틀	의 상방이 마감
	체(3)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깊	
	이를 남기도록 내부 공간(S)에 삽입되어,	
	상기 고정판(8,9)에 의해 상방이 마감 처리	
	되고,	
3-1		○ [도 8] 압입용 케이스부(22) 위에서 상
	상태로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는 제1 및	호 맞물림된 상태로 장착되는 기어체(20)
	제2 연동기어(6,7); 및	
3-2	상기 보스블럭(5) 위에 회전 가능하게 장	
	착되는 제1 및 제2 연동기어(6,7) 는 상기	되는 기어체가 장착플레이트(21)와 결합

접속틀체(3)의 외부로 돌출되거나 노출되 지 않는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 고정 판(8,9)과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 이식 문 연결구조. 상기 제1, 제2 연동기어(6,7) 위에 각각의 ○ [도 8] 기어체(20) 위에 자유단부가 일 자유단부가 일체로 결합되고, 상기 측단 체로 결합되고, 주·부패널체의 상하단 모 모서리면(21,31)과 인접한 상기 문짝 서리 말단 부분에 고정단부가 일체로 결 (20,30)의 상하단 모서리(22,32)의 말단 부 합된 장착플레이트(21) 분에 각각의 고정단부가 일체로 결합되어, 4 상기 제1 문짝(20)은 상기 제1 연동기어(6) 와, 상기 제2 문짝(30)은 상기 제2 연동기 어(7)와 각각 동기 회전하도록 연결하는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제1 및 제2 고정판(8,9);을 포함하고,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웃한 제1 및 제2 문짝[주 및 부패널체]]이 상대 회전하도록 연결하는 접속틀체[파이프체]인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1. 2-2

구성요소 2-1, 2-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보스블릭[압입용 케이스부] 이 접속틀체[파이프체]의 내부 공간에 삽입[압입]되고, 접속틀체[파이프체]의 축방향으로 제1, 2 체결공[압입용 케이스부에 형성된 축체(23)의 삽입 구멍]이 이격된 점, 고정판[장착플레이트]에 의해 제1, 2 연동기어[기어체]의 상방이 마감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1, 2-2의 보스블럭은 제1, 2 연동기어의 수납공간을 형성할 정

¹⁾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괄호 내에 표시하였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도로 접속틀체의 내부 공간에 삽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압입용 케이스부는 파이프체 내부에 기어체를 수납할 공간을 형성할 정도의 깊이로 압입되지 않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3-1, 3-2

구성요소 3-1, 3-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보스블릭[압입용 케이스부] 위에서 상호 맞물림된 상태로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는 제1, 2 연동기어[기어체]인점, 제1, 2 연동기어[기어체]의 상방이 고정판[장착플레이트]에 의해 마감되는 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2는 제1, 2 연동기어가 접속틀체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깊이를 남기도록 돌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에서 기어체는 파이프체 외부로 돌출된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라)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1, 2 연동기어[기어체] 위에 자유단부가 일체로 결합되고, 문짝[주·부 패널체]의 상하단 모서리 말단 부분에 고정단부가 일체로 결합되어, 제1, 2 연동기어[기어체]가 각각 동기 회전하도록 연결하는 제1, 2 고정판[장착플레이트]인 점에서 동일하다.

3) 차이점1, 2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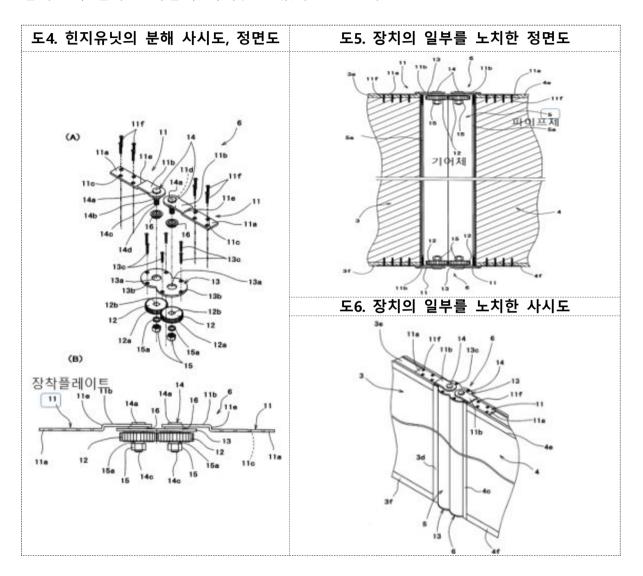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차이점 1은 보스블릭[압입용 케이스부]이 제1, 2 연동기어를 수납할 만한 공간

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접속틀체[파이프체] 내에 압입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차이점 2는 제1, 2 연동기어[기어체]가 차이점 1에서 언급된 수납공간에 수납되는지에 관 한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1,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의 판단은 실질 적으로 같다.

- 나)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제1, 2 연동기어[기어체]가 문짝[주, 부패널체] 연결부의 상부에 설치된다.
- 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제1, 2 연동기어는 접속틀체 내에 수납되고, 선행발명 1에서 기어체는 파이프체와 케이스체로 결합된 공간 내에 수납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모두 제1, 2 연동기어[기어체]를 시각적으로 은폐하고, 이물질 등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동일하다. 문 연결구조가 하나의 접속틀체로 형성된 것이 파이프체와 케이스체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에 비해 외관이 더 미려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
- 라) 선행발명 1의 케이스체는 파이프체와 동일한 형상이면서 바닥이 있으므로 파이프체 아래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케이스체 내부의 기어체는 장기적으로 압입용 케이스부가 침하되더라도 침하의 영향이 적다(을 제2호증, 식별번호 [0020], [도 8]). 따라서 선행발명 1은 파이프체 상부에 기어체가 수납되는 케이스체를 더 구비함으로써 파이프체 내부에 기어체 설치 공간을 별도로 형성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기어체의 처짐이나침하를 줄여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가 케이스체와 같은 구성을 채용할지는 구체적인 설계환경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 마) 더욱이 선행발명 1은 기어체를 케이스체 없이 파이프체의 내부에 장착하여 은 폐시키는 실시예도 개시하고 있다(선행발명 1의 도 4, 5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 1에서 케이스체를 제거하여 기어체를 파이프체 내부에 장착하여 은폐하는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고 보인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기어의 조립 구조가 단순하고 이로 인하여 조립이 쉬운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포함 되지 않는 이른바 '폐쇄형 청구항'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 명의 조립 구조가 선행발명 1보다 단순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기어의 조립 구조가 단순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계 장치 등의 분야에서 부품이 부가적으로 채택되면 기능이 향상되는 반면,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상식에 불과하고, 이러한 추가 부품의 채택 여부는 구체적인 설계 환경과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정할 사항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그 구성상 특징으로 선행발명 1에 비해 일방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